

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8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 이유

도곡온천지구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 및 온천 지구내의 행정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사업소의 위치 :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
- 사업소의 업무
- 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 (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)
- 온천수 및 주차장 사용료징수

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

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

제 1조(설치) 도곡온천지구 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 및 온천지구내의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조(위치) 사업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.

제 3조(업무)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온천지구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의 보호관리
2.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
3. 사용료, 임대료, 부담금 등의 조정부과 징수
4. 각종 금지행위의 지도 단속
5.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
6. 온천지구 개발, 관리,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
7.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4조(소장)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로 보한다.

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.

제 5조(공무원) 사업소에 소장이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 6조(사용료 징수) 온천수와 주차장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는 별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7조(시행규칙)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검 토 보 고 서

□ 조례명

-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제정(안)

□ 주요 내용

1. 도곡온천지구 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 (안 제 1조)
2. 사업소의 위치 :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(안 제 2조)
3. 사업소의 주요업무 (안 제 3조)
 - 온천지구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의 보호관리
 -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
 - 각종 사용료, 임대료,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
 - 온천지구개발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
4. 사업소 소장은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로 보함. (안 제 4조)

□ 제정 사유 (필요성)

- 도곡온천지구의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고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내무부에서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동 사업소 설치조례 제정

□ 검토 결과 (의견)

- 본 조례(안)은 내무부에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고 도로부터 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준칙(안)이 시달되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나,

- 다만, 도곡온천은 화순온천 개발사업보다 규모가 더 큰데 비해 (고시면적: 화순 온천 426천㎡, 도곡온천 842천㎡)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소장 직급은 5급이고, 도곡온천개발소 소장직급이 6급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점이 있으므로
- 화순,도곡 온천개발사업소를 통합 조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, 금회 설치되는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정원은 98. 12. 31일까지 한시정원 이므로 본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